5091 정보공개지침

2012. 12. 1 제정
2013. 11. 7(제1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 정보공개업무의 주관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
제6조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제7조 기록관리의 철저 등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제9조 사전 행정정보 공표
제10조 공표방법
제11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제13조 심의회의 기능
제14조 심의회의 운영
제4장 정보공개 결정통보 및 방법
제15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제16조 정보공개결정 통보 등
제17조 공개방법
제6장 불복절차 등
제18조 이의신청
제19조 행정심판 등
제20조 징계 회부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거,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①정보공개업무는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가 주관하며, 정보공개의 여부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 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공사의 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다음의 각호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공사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및 지원
3. 정보공개 담당 직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2013.11.7 조신설>

제6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관리의 철저 등) ①공사의 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공사 직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본 지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반드시 표시

하여 문서를 기안하여야 하며, 당해 문서의 결재권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소관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공사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013.11.7 조신설>

제9조(사전 행정정보 공표) 공사의 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사전 행정정보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정례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 및 공개의 주기·시기,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013.11.7 개정>

1. 공사 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 등에 관한 정보
2. 공사 주요 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관한 정보
4. 예산 집행 등 재정에 관한 정보
5. 각종 평가 및 감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국민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정보

제10조(공표방법) ①생산되는 공표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②해당 처리부서의 업무담당자는 공표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주관부서의 정보공개담당자 및 정보공개책임관과 최종 협의를 거쳐 게재한다. <2013.11.7 개정>

제11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한하여는 비공개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해당되는 정보
2.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 공개시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경영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자료로서 공개시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4. 각종 점검, 공직기강 관련 업무 중 점검반 현황, 점검일시 및 장소 등 구체적 정보로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점검 등 업무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
5.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6. 민원인이 비공개 처리를 요구한 민원서
7. 다른 부서에 의견조회 또는 자료요구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회신 또는 제출하는 문서
8. 기타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한석탄공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

②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의 세부분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호에 포함된 정보와 공개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하여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⑤공사의 장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정보공개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석탄공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2인의 총5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경영지원실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주관부서의 장과 심의안건 관련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외부위원은 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나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인 등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④주관부서의 정보공개담당자는 심의회의 간사가 되며, 간사는 심의회 심의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및 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심의회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전자문서생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처리부서에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된 정보공개청구 사항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③심의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결정통보 및 방법

제15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정보공개 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접수 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접수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에서는 청구된 내용을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처리부서가 된다.

③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결정 통보 등) ①정보공개 청구의 처리부서는 신속한 접수·처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한다.

④결정기간의 기산은 우편 또는 팩스 청구시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할 날로부터, 인터넷 청구시 청구서가 시스템상에 입력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되,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한다.

⑤청구된 정보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

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장 불복절차 등

제18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주관부서로 즉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의뢰하여 해당 사항을 심의토록 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3.11.7 조신설>

제19조(행정심판 등)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팡르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3.11.7 조신설>

제20조(징계 회부) ①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해당 업무담당자가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정당한 비공개 사유없이 공개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제4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징계 회부할 수 있다.

②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13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의거한 사유없이 해당 업무담당자가 주관부서로 심의 의뢰하지 않고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해당 이의신청을 처리한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제4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징계 회부할 수 있다.

③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공사에서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담당자가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제4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징계 회부할 수 있다.

<2013.11.7 조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①이 규정은 2013년 1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사전 행정정보 공표 목록 및 방법

1. 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 등에 관한 정보

대상 정보	공개주기	담당부서	공개방법
중장기 경영계획	연1회	기획전략팀	홈페이지
중장기 경영목표	연1회	기획전략팀	홈페이지
운영계획	연1회	기획전략팀	홈페이지

2. 주요 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

대상 정보	공개주기	담당부서	공개방법
투자 및 출자현황	연1회	재무관리팀	홈페이지
해외사업 추진현황	연1회	사업개발실	홈페이지
이사회 회의록	수시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임원추천위원회	수시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사회공헌활동	연1회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관한 정보

대상 정보	공개주기	담당부서	공개방법
안전관리 현황	연1회	안전외주팀	홈페이지
환경오염 방지활동	연1회	기술지원팀	홈페이지
환경오염지표 측정결과	분기1회	기술지원팀	홈페이지

4. 예산집행 등 재정에 관한 정보

대상 정보	공개주기	담당부서	공개방법
기관장 업무추진비	연1회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임원 업무추진비	수시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예산 집행현황	연1회	예산팀	홈페이지
인건비 집행현황	연1회	예산팀	홈페이지
현금 흐름표	연1회	재무관리팀	홈페이지
사채 발행현황	연1회	재무관리팀	홈페이지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분기1회	재무관리팀	홈페이지

5. 각종 평가 및 감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

대상 정보	공개주기	담당부서	공개방법
국회 지적사항	수시	기획전략팀	홈페이지
감사원 지적사항	수시	감사실	홈페이지
경영평가 지적사항	연2회	성과평가팀	홈페이지
내부감사결과	수시	감사실	홈페이지

6. 그 밖에 국민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정보

대상 정보	공개주기	담당부서	공개방법
광업소 운영현황	연1회	기획전략팀	홈페이지
무연탄 판매가격표	수시	고객지원팀	홈페이지
해외유연탄 가격 동향	수시	사업개발실	홈페이지
국내 무연탄 생산량	연1회	생산개발팀	홈페이지
국내 연탄제조업체 현황	연1회	고객지원팀	홈페이지
무연탄 생산능률 현황	연1회	생산개발팀	홈페이지
광량확보	연1회	생산개발팀	홈페이지
탄질현황	연1회	생산개발팀	홈페이지
무연탄 공급현황	분기1회	고객지원팀	홈페이지
정보공개 운영실적	연1회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별표 2> 비공개정보 세부분류기준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2.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4.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5.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국세징수법 제7조의 2)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6.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해외유연탄 및 북한 석탄광 개발사업 추진관련 협의 문서
2. 충무계획·을지연습계획 등 공사의 전시임무수행계획 및 전시훈련계획
3. 보안업무 시행계획 및 비밀취급 인가자, 보안시설 설계도, 보안장비 현황 등 보안관련 정보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과 시설 방호계획, 건물 도면 및 통신설비 등 직장시설 방호를 위한 부대편성 및 방호·보호계획
5.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공사 경영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기타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위험물의 저장 위치,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2.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등
3.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부조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2.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이 종료된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재결서·감정평가서 등)
4. 직원의 임면, 복무, 징계, 평정,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감사·감찰·점검계획 및 결과와 보고, 처리내역 중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2.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3. 개인목표관리 평가결과 및 근무평정 결과
4. 직원보수명세서, 건강진단표, 인사기록카드 등
5. 특정 직원의 집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6. 채용, 전보, 승진, 파견, 교육훈련, 징계, 퇴직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업체별 자금융자 및 담보내역(대출자금액 등), 업체별 신용평가·신용정보·연대보증내역 및 사후관리 내역 등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세부 계약사항 및 해당업체의 기술·특허·재무·내부기밀 등에 관한 정보, 기술평가 결과 등
3. 에특융자와 관련한 사항으로 해당기업의 경영·영업상의 세부 정보
4. 광산개발 계약, 지분거래 계약, 사업참여 합의서 등 해외사업 개발 관련 계약 세부 사항

○ **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약서

정보공개 심의 서약서

본인은 대한석탄공사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대한석탄공사 정보공개 심의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정보공개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관련자료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으며, 이에 관여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table>
<tr><td>제안부서</td><td colspan="5"></td></tr>
<tr><td>일시 및 장소</td><td colspan="5"></td></tr>
<tr><td>안건 및
심사내용</td><td colspan="5"></td></tr>
<tr><td>의결주문</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심사위원</td><td rowspan="2">직위</td><td rowspan="2">성명</td><td colspan="3">의결내용</td><td rowspan="2">서명</td></tr>
<tr><td>안건</td><td>가</td><td>부</td></tr>
<tr><td rowspan="2">위원장</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td><td></td><td></td><td rowspan="2"></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2">위원</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td><td></td><td></td><td rowspan="2"></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2">위원</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td><td></td><td></td><td rowspan="2"></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2">위원</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td><td></td><td></td><td rowspan="2"></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2">위원</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td><td></td><td></td><td rowspan="2"></td></tr>
<tr><td></td><td></td><td></td></tr>
<tr><td>간사</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able>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명	
회의 주관부서	
회의 개최일시	
회의장소	
참석자명단	
회의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결정사항 - 안건 ○에 대하여 ○○○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 ○에 대하여 ○○○와 같이 표결함	
비고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